

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[별표 9]

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(제24조제2항 관련)

1. 자격시험 과목

시험 과목	과목 내용
선박관계 법규	다음 각 목의 국내법 및 국제협약 가. 국내법: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,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선원법」, 「선박직원법」, 「선박안전법」,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, 「해운법」, 「해사안전기본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 나. 국제협약: 「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(SOLAS)」, 「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(MARPOL)」, 「선원의 훈련,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(STCW)」, 「국제 만재흘수선 협약(LL)」, 「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(TONNAGE)」, 「해사노동협약(MLC)」
해사안전 관리론	정부의 대표적인 사고예방 기법인 항만국통제제도 및 해사안전감독, 안전관리·비상대응 절차, 해양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, 해양관할권 및 항행권과 관련한 내용
해사안전 경영론	안전에 대한 법적책임, 안전정보의 확인, 안전경영정책의 수립·계획·측정·검사, 안전조직 구성·운영, 안전경영정책 환류와 관련한 내용
선박자원 관리론	인적자원관리, 과업 및 업무량 관리 적용 능력, 의사소통, 의사결정기술, 선박기기, 선박구조, 선박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내용
선택과목	다음 각 목의 과목 중 한 과목 택일 가. 항해(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항해사 시험과목 중 ‘항해’와 ‘상선전문’ 과목) 나. 기관(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기관사 시험과목 중 ‘기관(1)’과 ‘직무일반’ 과목) 다. 산업안전관리(산업안전 관련 법령, 안전 및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)

2.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: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가.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: 제1호의 자격시험 과목의 선택과목 중 가목의 항해 또는 나목의 기관 과목을 면제한다. 이 경우 면제

대상 과목은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응시했던 시험과목으로 한정한다.

나. 제23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: 제1호의 자격시험 과목의 선택과목 중 다목의 산업안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.